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0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한 2019. 11. 20.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 9. 5. 300만 원, 2019. 10. 21. 200만 원, 2019. 11. 20. 200만 원, 2019. 12. 5.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21. 3. 16.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C은 2021. 4. 5.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여 제소되었다. 법원은 2021. 8. 10. ‘피고 C은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가소141192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나. 피고 C과 피고 B의 협의이혼

1) 피고 C과 피고 B은 2019. 11. 20. 피고 C이 피고 B과 협의이혼 하는 조건으로 2019. 11. 20.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피고 B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자료재산분할포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C과 피고 B은 2019. 12. 3.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피고 C이 제3채무자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협의이혼에 따른 2분의 1 지분의 재산분할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9,161,064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10.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4196).

라. 피고 C의 변제

피고 C은 이 사건 판결금 변제 명목으로 2022. 1. 5.부터 2022. 11. 7.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변제일	변제금 (원)	증거
2022. 1. 5.	800,00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7
2022. 1. 11.	500,00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6
2022. 1. 25.	500,000	을 제4호증의 15
2022. 2. 23.	300,000	을 제4호증의 3
2022. 2. 9.	500,000	을 제4호증의 14
2022. 3. 2.	500,000	을 제4호증의 13
2022. 3. 14.	400,000	을 제4호증의 12
2022. 7. 6.	300,000	을 제4호증의 11
2022. 7. 29.	500,000	을 제4호증의 10
2022. 8. 16.	500,000	을 제4호증의 9
2022. 8. 18.	400,000	을 제4호증의 7
2022. 9. 21.	500,000	을 제4호증의 5
2022. 10. 4.	500,000	을 제4호증의 8
2022. 10. 7.	500,000	을 제4호증의 6
2022. 10. 19.	300,000	을 제4호증의 2
2022. 11. 3.	500,000	을 제4호증의 4
2022. 11. 7.	500,000	을 제4호증의 1
합계	8,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판결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C이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 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한 2019. 11. 20.자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피고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어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2019. 9. 5. 300만 원, 2019. 10. 21. 200만 원, 2019. 11. 20. 200만 원, 2019. 12. 5. 300만 원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21. 3. 16.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2021. 8. 10. 피고 C은 원고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피고 C이 제3채무자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협의이혼에 따른 2분의 1 지분의 재산분할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판결금 변제 명목으로 2022. 1. 5.부터 2022. 11. 7.까지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는 2019. 11. 20. 작성되어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 C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과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 체결 전에 발생되었다거나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과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자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2019. 11. 20.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 당시 채무자 피고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판결금 변제 명목으로 2022. 1. 5.부터 2022. 11. 7.까지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2019. 12. 기준 체납세액이 자동차세 219,900원, 지방교육세 65,97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는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채무자 피고 C이 2019. 11. 20.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과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포기 당시 채무자 피고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육진